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이해 교육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의 집합

- ① 사회적 목적
- ② 민주적 운영 원리
- ③ 호혜
- ④ 경제활동조직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경제적 가치 창출”

비영리
기관

영리
기업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사회적목적+수익배분금지+청산시 잔여재산 기부

시장매출(총수입=영업수입 + 영업외수익)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공식적으로 **비영리성**을 일부 갖도록 자격조건으로 요구

- ① 사회적목적 추구
- ②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 ③ 해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경제 기업에 기부

※ 영리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이윤은 주로 주주에게 배분(협동조합도 영리기업으로 분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지정기간 3년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일자리 창출 지원금,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상**

※ 강원도 지역형 3월, 10월 모집공고 예상(직전월까지 서류 등 준비완료 후 접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모집 공고

인증 and 예비

구 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 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주 관	고용노동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정부부처장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6개월이상)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③ 사회적목적실현 실적	③ 사회적목적실현(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⑤ 해당사항 없음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강원도 2회 접수 : 2월, 10월
최대지정기간	인증 이후 계속 지위 유지	3년

예비지정 절차

신청(접수)

*올해 예상시기임/ 부처형은 각 부처마다 상이함

공고시기

- 지역(강원도)형: 3월, 10월(하반기는 미정)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온라인 접수(파일 업로드)

실사 및 심사

결과발표: 약 3개월 소요(3월 공고시 5월~6월 지정)

- “접수서류검토, 현장실사, 심사”의 과정을 거침

예비지정 절차

- 촉박하게 준비하면 보완할 시간도 없음
- 접수월 3개월전부터 여유있게 준비하자

예시) 10월 공고면... 증빙자료는 9월말기준(공고월 직전월까지) 지역형(강원도형 기준)

- 신청: 1~2주/ 모든 서류 완료하여 접수해야함
- 실사: 1~2주/ 현장실사
- 심사
- 발표

※ 실사 시 시군(부처형은 해당 부처) 담당자와 '센터 담당자' 동행

※ 심사 시 시군 및 센터 참석(부처형은 해당 부처에서 자체 심사진행)

예비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 엄수)

신청서 검토 및
보완안내

현장실사

심사

지원개시

지자체(시군 담당자)

SEIS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지원기관(사회적기업팀)

기관별 역할

지자체(도,시군)

행정, 관리의 주체

접수, 신청

현장실사

심사

지원개시, 관리

정산

지원기관
(사회적기업팀)

지원 역할

사전 상담

실사지원

심사지원

지침해석

교육, 컨설팅

자격 요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조례 또는 규칙

- ① 조직형태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④ -
- ⑤ -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
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또는) 사업계획서 중요!

유형에 맞는 실적을 갖추거나,

향후 약 3개년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

단, 영업활동 증빙은 주사업관련 ‘매출’ 자료 제출
(재무제표, 매출장 등)

1. 조직형태

법인

법인 / 법률상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사업자, 창업팀 불가)

법인의 독립성

대상: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가 있을 경우

증빙: 별도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현황(4대보험가입자명부), 거래실적(필요시)'

확인: 독립된 '공간,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 지부, 지점, 지회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 등기에 표현이 되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인증, 지정'의 형태로 지위를 부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협

법인

↓ 자격요건 심사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우리 법인의 '(사회적)목적'이
어느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지 판단

향후 해당 유형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고려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기준: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제공횟수, 인원, 시간으로 산정)

증빙: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취약계층 증명자료



두루바른

사회적협동조합
DURUBARUN

작고 아름답게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 제공형

목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기준



HERB STORY



- (공고일 직전월 기준)1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전체 고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취약계층 의무 고용비율(30%) 대상 관참은일자리 제공(주15시간이상, 정규직, 최저임금 이상 등)

증빙: 4대보험가입자명부(상실신고서), 유급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취약계층증빙자료,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목적: 3가지 세부유형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

세부유형

- 1) 가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
- 2) 나형: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3) 다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기준: 목적과 근거에 따라 지역을 설정할 수 있음(춘천, 강원도, 영서, 폐광지역 등)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가)

목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준(택1): 지역취약계층 대상 고용 or 사회서비스 제공 20% 이상

증빙: 지역설정 근거(지역의 필요와 결핍 등), 주민등록등본, 지역공헌실적(거래 등)

(외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나)

목적: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

기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대비 40% 이상

증빙: 지역설정 및 문제설정 근거, 재무제표(매입매출장), 문제해결 공헌실적

※ 현재까지 도내 '나형' 사례 없음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다)

목적: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

기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대비 40% 이상

증빙: 지역설정 근거, 재무제표(매입매출장),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실적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혼합형

목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

기준: 취약계층 고용 20% + 사회서비스 제공 20%

증빙: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기타(창의혁신)형

목적: 기존 유형으로는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목적’

기준: 설립취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식, 지역사회 공헌도 등 종합판단

증빙: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전후 변화, 문제해결 정도 등)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안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규약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명서)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지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보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3.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증빙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저소득자: 가구원 전체의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가구원수 확인)

장기실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수혜 기관 또는 수혜자 증빙 필수(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전에 교육 및 컨설팅 받길 권장함(센터)

3.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의 범위

정의: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청소(시설관리), 고용서비스, 간병, 가사지원, 산림보전, 기타

확인: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업종코드, 과세표준 신고상 업종코드 등

증빙: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 관련 증빙서류

3. 사회적목적 실현

지역 거래 실적

지역사회공헌

지역 업체와의 매입, 매출 실적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한 실적

(예시/가형: 원주 지역농가 농산물 매입 비율, 원주 학교 급식 매출 비율)

‘지역’ 근거

지역에 어떤 ‘문제, 결핍, 욕구, 수요’가 있어 ‘공헌’ 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배경 서술

(예시/정선: 폐광 이후 실직자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폐특법 근거 등)

4. 정관의 필수사항

[공식적으로 비영리성을 일부 갖도록 명시함]

1. 목적: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으면 2/3 이상을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3.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정관에 해당 사항 명시, 또는 별도규정(인사규정, 취업규칙)으로 처리한다고 명시
 - 별도규정으로 처리할 시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필수구비
 - 종사자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함(민원24, 지방고용노동청)

5. 영업활동(실적)

1. 사업자등록증

2. 주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 활동(실적)

- 재무제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
- 공고일을 포함한 3개월 실적(활동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탈락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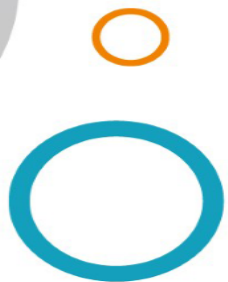
1. 개인사업자 또는 별도 법인 있을시(동일업종, 공간 혼용, 근로자 및 사업 혼재)
2. 고용조정(3개월 이내 해고 등) 및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비)
3. 사회적목적 실현 가능성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매출, 계획, 실적 등 종합판단)
4. 정관 미비(공증이 없거나, 필수사항 중 1가지라도 미비할 시)
5. 기타 구비서류 미비(공고문 반드시 확인)
6. 기타 법률적 위반사항, 허위사실 등 적발시

* 사전에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노력 필요(사회적목적, 계획, 실적, 매출, 서류구비)

제출서류

공고문 반드시 확인할 것(미비시 탈락)

1. 지정 신청서
2. 사업계획서(사회적목적과 달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조직형태 서류(등기부등본 등)
4.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증빙자료)
5. 유급근로자 관련 서류(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취약계층 증빙 등)
6. 영업활동 실적 증명 서류(재무제표 등)
7. 정관 또는 규약(사회적기업 정관 필수 사항 및 공증)
8. 법령준수 확인서/ 정보이용동의서
9. 기본, 노무, 회계 교육이수확인증(1년 이내 대표자 명의)



공고문을 면밀하게 살피고,
전문지원기관에 상담&컨설팅을 받자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